

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

(앞쪽)

1. 제출인

① 법인명(상호)		② 사업자등록번호	
③ 소재지(주소)		④ 주업종(업종코드)	
⑤ 대표자		⑥ 사업연도(과세기간)	. . . ~ . . .

2.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

⑦ 법인명(상호)		⑧ 사업자등록번호	
⑨ 국가명(국가코드)		⑩ 소재지국 납세자번호	
⑪ 소재지(주소)		⑫ 주업종(업종코드)	
⑬ 대표자(성명)		⑭ 사업연도(과세기간)	. . . ~ . . .
⑮ 전자우편주소			
⑯ 직전 연도 연결 매출액	(통화코드)	(금액)	

⑰ 제출의무자의 지위

- [] 1.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국내의 최종모회사
- [] 2.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국내 관계회사
- [] 3.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관계회사
- [] 4.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외국의 최종모회사
- [] 5.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위 2 또는 3 등의 사유로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외국 관계회사(외국 대리모회사)

3.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 목록

⑱ 일련 번호	⑲ 법인명(상호)	⑳ 사업자등록번호	㉑ 대표자 (성명)	㉒소재지	㉓주업종 (업종코드)	㉔사업연도 (과세기간)
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※ 이 서식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가 제출해야 합니다.

1. ① ~ ⑥ :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.
2. ⑦ • ⑨ • ⑪ • ⑬ :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법인명(상호), 국가,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.
3. ⑧ :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4. ⑨ :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(ISO)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(ISO-3166 Alpha 2)에 따라 적습니다.
5. ⑩ :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소재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는 경우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.
6. ⑫ : 주업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 • 단순경비율에 따른 대분류를,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 • 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.
7. ⑮ : 전자우편주소는 제출의무자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. 다만, ⑰란에 따른 제출의무자의 지위가 4 또는 5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.
8. ⑯ : 직전 연도의 연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통화코드(ISO 4217)와 함께 적습니다.
예) USD(미국 달러), EUR(유로), CNY(중국 위안), JPY(일본 엔), GBP(영국 파운드), HKD(홍콩 달러), AUD(호주 달러), CHF(스위스 프랑), CAD(캐나다 달러) 등
9. ⑱ ~ ㉔ : 제출인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